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공포로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미만 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음식물쓰레기 봉투의 찢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투의 재질을 보완하며, 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는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5톤미만을 대상으로 함.

나. 5톤 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을 규정. (안 제4조)

-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0.5톤 미만에 대하여는 건설폐기물용 폴리프로필렌 봉투에 담아 배출
- 0.5톤 이상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자 또는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도록 함.

다. 음식물쓰레기 봉투의 찢어짐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 (안 제6조)

-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생분해성 수지로 제작함으로써 재질이 약하여 찢어짐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수거등에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찢어짐을 예방할 수 있도록 봉투의 재질을 보완하려는 것임.

라. 법령 명칭변경에 따른 용어의 변경. (안 제9조, 제14조)

-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중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한 정의 및 배출방법의 규정이 개정됨과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 공사장폐기물의 처리방법과 보완하고자하는 쓰레기봉투(일반용, 음식물쓰레기 전용, 공공용)의 재질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폐 기 물 관 리 법

제13조(생활폐기물의 처리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이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생활폐기물” 이라한다)을 배출하는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를 포함한다)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토목·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무보사위원회)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국 소 별		2001년도 본 예산	2000년도 본 예산	증 감
개		117,602,701	101,808,162	15,794,539
기 회 신		14,398,344	10,574,094	3,824,250
총 무 국	소 계	46,610,953	43,727,885	2,883,068
	총 무 과	7,885,748	8,218,465	△332,717
	시 민 과	1,257,651	1,150,981	106,670
	세 무 과	563,428	480,255	83,173
	회 계 과	22,748,531	23,119,604	△371,073
	문화체육과	14,155,595	10,758,580	3,397,015
사회 산업 국	소 계	41,587,258	38,637,714	2,949,544
	사회복지과	21,962,463	17,238,850	4,723,613
	환경보호과	19,624,795	21,398,864	△1,774,069
보 건 소		1,602,350	1,022,998	579,352
읍 면 동	소 계	13,403,796	7,845,471	5,558,325
	문 산 읍	1,690,479	1,075,357	615,122
	파 주 읍	1,234,890	748,370	486,520
	법 원 읍	1,147,084	773,525	373,559
	월 룡 면	945,724	477,187	468,537
	탄 현 면	946,125	455,556	490,569
	교 하 면	970,512	537,522	432,990
	조 리 면	1,236,067	692,097	543,970
	광 탄 면	963,473	564,269	399,204
	파 평 면	830,356	416,567	413,789
	적 성 면	1,009,984	586,334	423,650
	군 내 면	434,672	130,073	304,599
	금촌 1동	1,059,665	654,326	405,339
	금촌 2동	934,765	734,288	200,477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01년도 본 예산	2000년도 본 예산	증 감
개	7,362,203	5,651,456	1,710,747
의료보호	5,989,411	4,391,989	1,597,422
영세민생활안정기금	127,000	86,500	40,500
정영수익사업	1,245,792	1,172,967	72,825